

# 보육연구소 운영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** 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연구소(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)라 칭하며,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)안에 둔다.

**제2조** (목적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철학과 목표를 출발점으로 한 보육관련교육사업을 전개하며, 보육현장과 학문현장을 연계한 보육연구를 통한 보육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, 나아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 대학교와 보육학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.

**제3조** (사업)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보육에 관한 연구 및 연구자료수집
2. 보육관련 교재 집필 및 출판
3. 보육관련 학술세미나 개최
4. 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 제 2 장 조직

**제4조** (임직원) 본 연구소의 조직구성에 필요한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1인
2. 운영위원 약간인
3. 전임 및 특별연구원 약간인
4. 간사 약간인
5. 조교 약간인

**제5조** (자격 및 임명)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전임 또는 특별연구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조교는 본교 조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.

**제6조** (임기)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** (직무)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전임연구원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주어진 연구소의 제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, 특별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를 수행한다. 전임연구원은 간사를 겸직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④ 조교는 간사를 보좌한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8조** 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본 연구소의 제반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9조** (소집과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4 장 재정 및 사업보고

**제10조**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
2. 외부의 연구 지원금
3. 자체수익금
4. 기타

**제11조** 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12조** (사업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운영보고
2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
3. 연구소의 연구업적 수시보고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 제 5 장 부 칙

**제1조** (규약의 개정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**제2조** (기타 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
**제3조** (발효)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제 5 장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